



# FTA 품목분류

HS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분류

오수교 | KPMG 관세사

EREPORT

# HS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분류



오수교  
KPMG 관세사<sup>1)</sup>

자유무역협정(FTA) 등 특혜 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에서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나라 수출입물품에서 자동차는 국가경쟁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하는 부품의 수출입 비중도 크다. 자동차는 3~5만 개의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많은 부품의 품목분류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쟁점도 많이 발생한다.

이 글은 이런 점을 참작하여 제8708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1 필자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을 마지막으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2015년 9월부터 KPMG 관세법인에서 품목분류와 FTA 전문 관세사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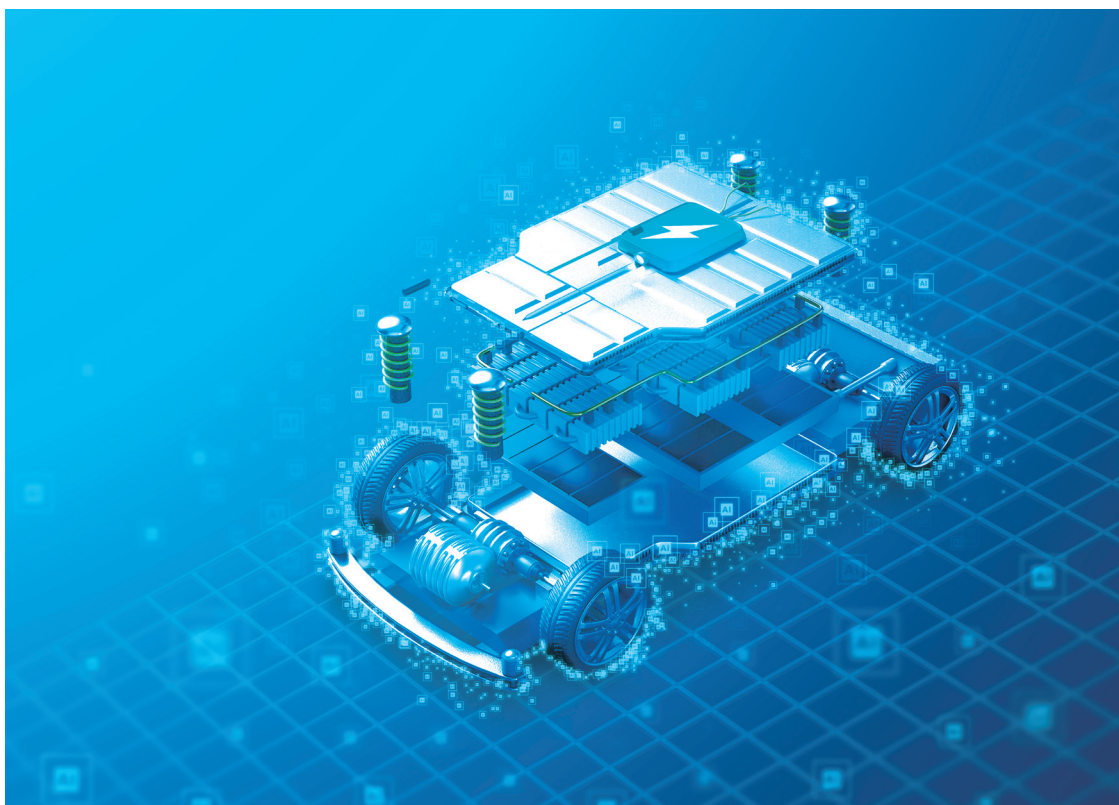
## 1 제8708호에 속한 소호(sub-heading)의 분류체계와 특정 국가 특혜세율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이 호에는 다음 표와 같이 총 15개의 6단위 소호(이하 ‘소호’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세율은 소호에 따라 그 차이가 있는 ①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②인도로 수출

하는 물품에만 표기하였다. 다만, ① 중국에서 수입하는 소호 제8708.30호와 소호 제8708.99호는 HSK 10단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즉, HSK 제8708.30-3000호(전자 제어식 제동 장치)와 HSK 제8708.30-9000호(기타), HSK 제8708.99-9000호(기타)는 3.2%이고, 나머지는 0.8%이다.



[표 1] 제8708호의 소호의 분류체계와 세율

| HS Code |    | 소호의 용어                                                               | ①한-중FTA<br>(수입세율) | ②한-인도<br>CEPA<br>(수출세율) |
|---------|----|----------------------------------------------------------------------|-------------------|-------------------------|
| 8708    | 10 | 완충기(bumper)와 그 부분품                                                   | 4.4%              | 15%                     |
| 8708    | 2  |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8708    | 21 | 안전벨트                                                                 | 0.8%              | 15%                     |
| 8708    | 22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br>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                 | 0.8%              | 15%                     |
| 8708    | 29 | 기타                                                                   | 0.8%              | 15%                     |
| 8708    | 30 |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0.8/3.2%          | 15%                     |
| 8708    | 40 |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 3.2%              | 6.25%                   |
| 8708    | 5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br>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 3.2%              | 15%                     |
| 8708    | 70 |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 4.4%              | 6.25%                   |
| 8708    | 80 |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br>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 3.2%              | 15%                     |
| 8708    | 9  |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8708    | 91 | 방열기와 그 부분품                                                           | 4.4%              | 15%                     |
| 8708    | 92 |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 3.2%              | 15%                     |
| 8708    | 93 | 클러치와 그 부분품                                                           | 3.2%              | 15%                     |
| 8708    | 94 |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과 그 부분품                              | 5.6%              | 15%                     |
| 8708    | 95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 3.2%              | 15%                     |
| 8708    | 99 | 기타                                                                   | 0.8/3.2%          | 5%                      |

## 2 제8708호로 분류하기 위한 조건

이 호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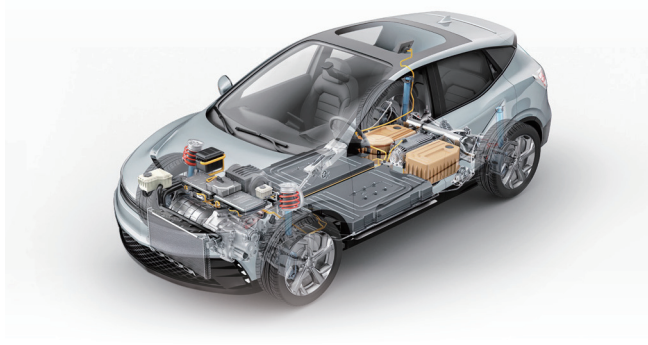
(1)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17부 주 제2호에 따르면,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①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②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예를 들면 ① 기어박스(gear box)가 블도저(제8429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면 제8431호로 분류한다. 또한, ② 기어박스가 철도용 기관차(제8601호)·헬리콥터(제8802호), 장갑차(제8710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해도 제8708호로는 분류할 수 없다.

실무에서 전용(use solely)인지는 크게 다툼의 여지가 없지만, '주로 사용(use principally)'을 해석하는 데 있어 그 구분이 명료하지 않은 점이 있다. 주로 사용하는지는 일차적으로 수입자가 구조나 설계상의 특성 등의 관련 사실에 근거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제17부 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제8708호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아래 3항 참조)





### 3 제8708호에서 제외하는 물품

(1)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  
(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  
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다. 제82류의 물품(공구)

라. 제8306호의 물품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

아. 제91류의 물품

자. 무기(제93류)

차. 제9405호의 조명기구와 그 부분품

카.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  
(제9603호)

참고로 아래 사례1은 WCO HS 위원회에서  
제17부 주 제2호사목 등을 적용하여 제9029.  
90호로 결정한 “자동차 계기반용 메인보드  
(PCB)”이다. 물론 자동차용 계기반과 그  
부분품은 제8708.29호의 “차체의 부분품”에  
해당하지만, 이 물품은 회전속도계와 주행  
거리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  
는데, 품목분류는 독립된 개체별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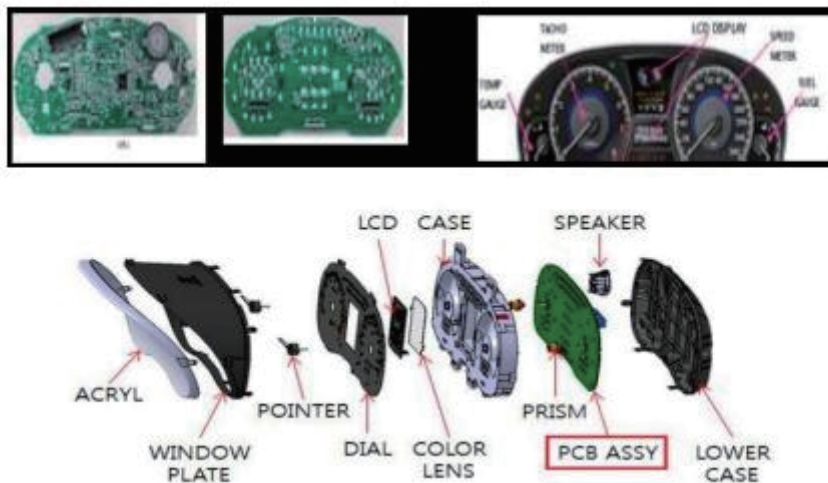
이 원칙에 따라 스피커만 독립된 개체로 수출입  
하면 제8518호로, 액정 디스플레이(LCD)도  
상태에 따라 제8528호나 제8529호로, 컬러렌즈  
(color lens)와 프리즘(prism)은 제9001호나  
제9002호로 분류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구체적으로 열거된 호가  
없을 때만 해당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사례 1]

◆ 약 440개의 능동소자와 수동소자를 갖춘 것으로서, 이 물품은 완전한 계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수입 후 원도 플레이트, 액정 디스플레이(LCD), 스피커, 지시 포인터와 다양한 플라스틱 구조부품을 포함한 다른 부품과 결합한다.

최종 계기반은 차량 휠에 장착된 홀센서에서 별도의 전자제어장치(ECU)가 받는 데이터를 통해 속도, 분당 회전수(RPM)와 주행 거리 및 냉각수 온도, 잔여 연료량, 문 열림 경과와 같은 차량 상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다음 사례2도 WCO HS 위원회에서 제17부 주 제2호가목을 적용하여 제4016.93호로 결정한 “자동차 브레이크 스템용 컵”이다. 제동장치

시스템(brake system)의 부분품으로 소호 제8708.30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 [사례 2]

◆ 가황고무로 만들어져 있고 바닥의 지름이 36.5mm, 상부의 지름이 38.0mm이며 두께는 8.0mm이다. 이것은 휠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유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개스킷으로 사용한다.



(2) 제17부 주 제2호 외에 이 표의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과 부속품이 차량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아래와 같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제8708호에서 제외한다.

- ① 경화고무 이외의 가황한 고무로 만든 프로파일 모양의 물품(특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4008호)
- ② 가황한 고무로 만든 전동용 벨트(제4010호)
- ③ 고무타이어·호환성 타이어 트레드(tread)·타이어 플랩(flap)과 이너 튜브(제4011호 부터 제4013호까지)
- ④ 가죽으로 만든 공구 백(제4202호)
- ⑤ 예인용 로프(제5609호)
- ⑥ 방직용 섬유로 만든 양탄자(제57류)
- ⑦ 강화유리나 합판유리로 된 틀을 붙이지 않은 안전유리(성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7007호)
- ⑧ 백미러(제7009호나 제90류)
- ⑨ 속도계·적산회전계 등에 사용하는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제8483호)
- ⑩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유아용 안전 의자를 포함한다)

백미러를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8708호로 분류하지 않고, 제7009호로 분류하는 근거는 통칙 제1호와 통칙 제3호가목이다.

왜냐면, 제7009호나 제8708호로 분류하자는 의견이 대립하면, 추가로 통칙 제3호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일견 백미러가 제7009호와 제8708호의 둘 이상의 호로 분류 가능하다면 통칙 제3호가목을 적용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하여 분류'한다.

즉, 제7009호의 백미러가 물품명(name)이라면 제8708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종류(class)에 해당하고, 백미러가 명확하게 서술된 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실무에서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인데, 이런 경우는 물품명이나 구체적으로 서술된 호로 우선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 4 제8708호의 소호 해설

본론에 앞서 제8708호의 소호에서 ‘그 밖의’라고 표현한 용어의 의미와 ‘기타(other)’라고 표기한 소호의 분류원칙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우선, 소호의 용어에 ‘그 밖의’란 표현이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이 총 4개가 있다.

① 5단위 소호 제8708.2호에서 ‘그 밖의’란 앞에서 열거한 소호 제8708.10호의 완충기를 제외한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지칭하는 것이다. 완충기는 차체의 부분품에 해당하지만, 제8708.2호로는 분류하지 않는다.

② 소호 제8708.22호에서 ‘그 밖의’란 앞에서 열거한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와 후방 창문을 제외한 나머지 창문(window)을 지칭하는 것이다.

③ 소호 제8708.50호에서 ‘그 밖의’란 앞에서 열거한 소호 제8708.40호의 기어박스를 제외한 동력전달장치를 말한다. 기어박스는 대표적인 동력전달장치이다.

④ 5단위 소호 제8708.9호에서 ‘그 밖의’란 앞에서 열거한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품과 부속품을 지칭한다.

다음 ‘기타(other)’라고 표기한 소호는 제8708.29호와 제8708.99호이다. 제8708.29호는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 중에서 ① 완충기, ② 안전벨트, ③ 창문이 아닌 것을 분류한다.

소호 제8708.99호는 앞의 14개 소호에 분류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 이 경우에 앞의 호로 분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호로 분류하면 품목 분류의 오류가 된다. 실무에서는 이런 잘못이 빈번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1) 소호 제8708.22호

이 소호에는 제87류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을 분류한다.

즉, 소호 제8708.22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으로 한정한다)

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열장치나 그 밖의 전기·전자장치를 결합한 것에 한정한다)

참고로 WCO HS 위원회에서는 사출 성형된 고무스트랩이 자동차 유리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도 이 소호로 분류하였다(아래 그림1-② 참조). 물론, 이 소호주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용 유리는 제7007호로, 사출 성형된 고무 스트립만 별도로 수출입하면 제4008호로 분류한다.

(2) 소호 제8708.29호(기타)

이 소호에는 앞의 3개 소호로 분류할 수 없는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 즉,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 하물 넣는 곳, 문(door)과 그 부분품, 보닛(bonnet)(후드), 창틀(window frame), 발판, 윙(wing)[펜더(fender)]·진흙받이, 계기반(dashboard), 방열기 덮개(radiator cowling)<sup>2</sup>, 번호판 브래킷(bracket), 조종 브래킷(bracket), 외부하물선반, 뺑(bvisor), 바닥용 매트[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이나 비경화(非硬化) 가황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sup>3</sup>] 등을 분류한다.

또한, 이 소호에는 제8707호의 차체에 해당하지 않는 차체의 조립품도 분류한다.

[그림 1] 자동차 부분품

|                                                                                     |                                                                                     |                                                                                     |                                                                                      |
|-------------------------------------------------------------------------------------|-------------------------------------------------------------------------------------|-------------------------------------------------------------------------------------|--------------------------------------------------------------------------------------|
|  |  |  |  |
| ① bumper<br>(제8708.10호)                                                             | ② window glass<br>(제8708.22호)                                                       | ③ bonnet<br>(제8708.29호)                                                             | ④ brake system<br>(제8708.30호)                                                        |

2 방열기 덮개는 방열기의 부분품인 제8708.91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3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은 제57류에, 비경화 가황고무로 만든 것은 제4016호에 분류한다.

## (3) 소호 제8708.30호(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이 소호의 제동장치(brake)의 부분품에는 플레이트(plate)·드럼·실린더·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lining)·유압식 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이 있다. 다만, 장착되지 않은 브레이크 라이닝은 제6813호로 분류한다.

## (4) 소호 제8708.40호(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이 소호에는 모든 형식[기계식·오버드라이브(overdrive)·자동변속장치(pres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 부분품을 제외한다), 기어피니언(gear pinion), 직접 구동식 교합 클러치와 셀렉터 봉(selector rod) 등을 분류한다. 그러나, 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샤프트(shaft)는 제8483호로 분류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 (5) 소호 제8708.50호[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이 소호의 부분품에는 차동장치의 케이싱, 유성(遊星)기어장치(sun and planet gear pinion), 허브(hub)·스터브 차축(stub-axle), 차축 저널(axle journal)·스터브 차축(stub-axle)의 브래킷(bracket) 및 프로펠러 샤프트·하프샤프트, 기어·기어링,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감속기어조립품, 유니버설 조인트) 등을 포함한다. 다만, 엔진의 내부 부분품인 연결봉(connecting-rod·압봉(push-rod)·밸브리프터(valvelifter) (제8409호)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캠샤프트(cam shaft)·플라이휠(flywheel) (제8483호)는 제외한다.

## (6) 소호 제8708.70호[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그림 2] 자동차 부분품

|                                                                                     |                                                                                     |                                                                                     |                                                                                       |
|-------------------------------------------------------------------------------------|-------------------------------------------------------------------------------------|-------------------------------------------------------------------------------------|---------------------------------------------------------------------------------------|
|  |  |  |  |
| ① torque converter<br>(제8708.40호)                                                   | ② rode wheel<br>(제8708.70호)                                                         | ③ shock-absorber<br>(제8708.80호)                                                     | ④ radiator<br>(제8708.92)                                                              |

이 소호의 로드 휠은 타이어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무한궤도 차량용의 트랙과 차륜 세트, 림(rim)·디스크(disc)·허브-캡(hub-cap)·스포크(spoke)을 분류한다.

(7) 소호 제8708.80호[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다만, 철강제의 스프링은 제7320호로 분류한다.

(8) 소호 제8708.94호[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steering box)와 그 부분품]  
이 소호의 부분품에는 운전대의 축(axle), 기어 변환장치와 핸드 브레이크의 레버, 액셀러레이터·브레이크·클러치 페달, 브레이크용·클러치용의 연결봉(connecting-rod)을 분류한다.

(9) 소호 제8708.95호(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이 소호에는 모든 형식의 안전 에어백(예: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그 밖의 머리 보호를 위해 측면, 천장에 부착하는 에어백 등)을 분류한다. 팽창 시스템은 가스 주입을 지시하는 점화기(igniter)와 용기에 들어 있는 팽창 가스로 구성한다. 다만, 원거리 센서(remote sensor)나 전자 제어기(electronic controller)는 팽창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는다.

(10) 소호 제8708.99호(기타)

이 소호에는 앞의 14개 소호로 분류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분류한다.

① 엔진을 갖추지 않은 채시(여러 가지 기계적인 부분품을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그림 3] 자동차 부분품

|                                                                                     |                                                                                     |                                                                                     |                                                                                      |
|-------------------------------------------------------------------------------------|-------------------------------------------------------------------------------------|-------------------------------------------------------------------------------------|--------------------------------------------------------------------------------------|
|  |  |  |  |
| ① muffler<br>(제8708.92호)                                                            | ② clutch<br>(제8708.93호)                                                             | ③ steering wheel<br>(제8708.94호)                                                     | ④ fuel tank<br>(제8708.99)                                                            |

그 부분품에는 사이드멤버(side-member)·브레이스(brace)·크로스멤버(cross-member), 서스펜션 마운팅(suspension mounting), 차체(coachwork)·엔진·발판·축전지·연료 탱크용 등의 지지구(支持具)와 브래킷(bracket) 등을 포함한다.

## ② 연료탱크

③ 액셀러레이터 케이블: 이 케이블은 차량의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엔진 연료 제어장치와 연결하도록 제작한 것이다. 다만, WCO HS 위원회에서 용도에 따라 파킹 브레이크의 제동과 이탈 장치를 자동차 제어장치에

연결하도록 제작한 핸드 브레이크용 케이블(나선형 강선)은 제8708.30호로, 클러치 케이블(나선형 강선)은 제8708.93호로 분류했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지붕에 장착하는 화물적재함 또는 접이식 화물적재함

⑤ 탈부착식 이동용 캠퍼 팝탑(campier pop-top)

그 외에도 많은 부분품과 부속품을 이 소호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HS 해설서에 더 열거한 것은 없다.

## 5 블랭크(blank)의 해설

제8708호로 분류하는 부분품으로 기어, 트랜스미션, 연결봉, 베어링 허브와 같은 물품은 블랭크(blank) 상태로 거래하는 예도 있다.

통칙 제2호가목에서 정의한 블랭크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즉,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야만 완성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완전한 상태의 물품인데,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통칙에서 정의한 블랭크에 해당하면 완성품과 같은 소(또는 소호)로 분류한다.

특히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이런 블랭크를 수입하여 완성품으로 가공했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품목번호의 변경이 없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블랭크에 해당하는지가 원산지물품을 판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WCO HS 위원회 사례를 소개 하면, 철강을 단조하여 만든 물품으로 비록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하지만, 통칙 제2호가목 에서 규정한 블랭크에 해당하므로 완성품과 같은 소호로 분류하였다. 만약, 이 물품이 블랭크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7207호 (비합금강)나 제7224호(그 밖의 합금강)으로 분류한다. 이런 물품은 상당한 정도까지 더 가공하여야만 완제품의 모양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블랭크와 차이가 있다.

[그림 4] WCO HS 위원회 사례

| 구분 | 외륜 완성품                                                                                                                     | 외륜 미완성품(단조품)                                                                                     |
|----|----------------------------------------------------------------------------------------------------------------------------|--------------------------------------------------------------------------------------------------|
| 물품 | 플랜지가 결합한 테이퍼 롤러베어링 허브 유닛용 외륜 완성품이다.<br>외경 96mm, 플랜지 지름 159mm로서 볼트용 테이터 홀이 있어 플랜지가 결합한 테이퍼 롤러베어링 허브 유닛에 조립된 후 자동차 차체에 결합한다. | 외측의 완성품과 같은 형태와 크기이나, 외륜으로 사용하기 전에 선반 가공, 열처리와 연마를 하여야 한다. 이 물품은 구름 요소를 위한 복열궤도와 플랜지의 볼트 구멍이 없다. |
| 그림 |                                         |              |
| 분류 | 통칙 제1호(제17부 주 제3호)와 제6호를 적용하여 제8708.50호로 분류한다.                                                                             | 통칙 제3호(제17부 주 제3호와 제15부 주 제1호사목), 제2호가목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제8708.50호로 분류한다.                             |



## 6 결론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앞의 3항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8708호 외에 다른 호로 분류하는 물품이 훨씬 많다. 물론, 이들의 부분품이나 부속품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고 제8708호로는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8708호의 품목분류 검토과정에서 유념할 사항으로 첫째는 제8708호에서 제외하는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제8708호에서 “기타”라고 표기한 소호로 분류하기 전에 앞에서 열거한 소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로는 미완성된 물품이라면 통칙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블랭크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검토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는 중대하여 치유하기가 어렵다.

끝으로 과세관청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세논리를 찾아 이를 집행하려는 DNA를 갖고 있다.

더욱이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고 난 뒤에 과세논리를 스스로 반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수출 물품은 수입국 과세당국을 상대로 수출자의 주장을 펼쳐야 하므로 여러 가지 제약도 따른다.

따라서 경합하는 품목번호에 따라 세율 차이가 있는 경우에 낮은 세율로 수출입하려면 명확한 근거 규정과 선례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

